의안 번호	915

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❍ 제출연월일 : 2012. 7. 2.(월)
- ❍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❍ 위원회회부 : 2012. 7. 4.(수)
- ❍ 위원회심사 : 2012. 7. 18.(월)

2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분과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구분 삭제(안 제7조)

나.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
다.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0조)

라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규정이 “임의규정”에서 “의무규정” 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(안 제17조~제21조)

4. 근거법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❍ 제7조의2제2항 중 “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.”에서 “주사”라는 용어는 ○○○주무관이나, 지방행정주사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